

영문논문집편집위원회운영규정

제 정: 2019.02.15.(이사회승인)
최근개정: 2022.08.25.(이사회승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42조에 의거하여 영문논문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Editor-in-Chief) 1인과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적정한 수의 편집인(Editor)과 부편집인(Associate Editor)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모두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편집인 가운데 1인을 간사로 정한다.

제3조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모두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무)

- ① 본 위원회는 논문집의 발간에 관한 기획의 수립, 논문의 투고 및 접수, 심사, 편집 및 출판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논문집은 정기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발행의 횟수, 특집호의 발행여부, 및 논문게재료의 책정 등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행 규정(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되, 정기회의는 정기 학술대회 기간에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의 의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위원은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할 경우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③ 회의는 편집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편집위원회와 편집인이 참석하는 편집인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매 호의 논문집 발간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인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
- ④ 회의 안건은 재적수의 과반 수 출석(위임장 포함)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직무대행은 해당 위원회의 간사가 맡는다.

제6조 (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2019.2.15.)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1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19.)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의 개정일은 2019년 8월 19일(이사회 승인) 이다.

제2조 (시행일) 위 개정일(2019.8.19.)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2019년 3월 18일자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의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9.9.6)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2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